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756

발의연월일: 2022. 8. 3.

발 의 자:최종윤·강선우·김승남

김승원 · 김용민 · 김태년

양경숙 · 윤준병 · 이인영

조승래 • 조오섭 • 조정식

한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고,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위한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금 관련 담당부서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
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
	<u>여야 한다.</u>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